

서울시 공익제보자 보상지원

보상금
지급

최대한도 없이,

시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

30% 지급

포상금
지급

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**최고 2억원**

구조금
지급

치료, 이사장송, 임금손실 등 피해
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



Q&A

FAQ

서울시 공익제보 상담

상담창구	전화번호	위치
시 공익제보지원센터	2133-3447	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
호루라기재단	2068-6930	서초구 반포대로 90, 2층(서초동, 세환빌딩)
한국투명성기구	717-6211	종로구 새문안로 42, 1006호



I·SEOUL·U
내와 나의 서울

당신의 용기있 는 제보

서울시와 「공익제보 안심 변호사」
안심하고 해결해드립니다.



eungdapso.seoul.go.kr



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보호를
최우선으로 합니다.



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. 공익제보 **안심하고 신고**하세요!



서울시 공익제보란(Whistleblowing)?

서울시 공직자 비리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 등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


공익제보의 대상



부패신고 (부패방지권익위법)	공익신고 (공익신고자 보호법)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(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 및 위법행위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▶ 시 예산이 사용되는 계약·위탁·용역업체 등이 위법행위로 시에 재정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▶ 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울시 사무와 관련된 시민의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총279개의 법률 위반 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품수수·공금횡령, 부정청탁 ▶ 공용물건의 사적 사용 ▶ 공공거래를 이용한 사거래 등



공익제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- 홈페이지 : eungdapso.seoul.go.kr “원순씨 핫라인”
 - 우편/방문 :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공익제보센터
 - 팩 스 : 02-2133-1306~7 • 상 담 : 02-2133-3447~9
- ※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.



공익제보 주요 사례 (직장 내, 우리 동네에서 공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보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.)



당신의
용기 있는 제보에
“신분보장”
“비밀보장”
“철저한 조사”
로 답하겠습니다.

서울시와
「공익제보 안심 변호사」가
함께 합니다.



내부공익제보자 전국최초 대리신고제 「공익제보 안심 변호사」



내부비리,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세요

- ▶ 서울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▶ 공익제보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, 익명유지가 필요한 제보자에 대해서는, 서울시가 공식 지정된 '안심변호사'가 공익제보자를 대리해 시에 접수합니다.
- ▶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.
- ▶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


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연락

분야	이름	이메일
반부패	이원호	leewonho@seoulbar.or.kr
	이상희	shlee@jihyanglaw.com
	박병언	pbe1894@gmail.com
	최재홍	jaebong75@naver.com
	이상대	xingd1@nate.com
환 경	정남순	jns@kfem.or.kr
소비자	김희경	mediatorkim@gmail.com
	조용의	cho.yongui@gmail.com
복 지	정민영	minyong.choung@gmail.com
인 권	김수영	sykim798@hanmail.net

※ 단순 진정이나 일반민원 상담은 공익제보 상담 및 대리신고에서 제외됩니다.